

수 의 사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2022. 4.

농 립 축 산 식 품 부
(방역정책과)

1. 개정이유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의사에게는 동물의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에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의무를, 동물병원 개설자에게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와 진찰 등의 일정한 진료비용은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게시할 의무를 각각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이 개정(법률 제18691호, 2022. 1. 4. 공포)됨에 따라 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안 제13조의2 신설)

-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의 진료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 * 1.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内部臟器), 뼈 및 관절(關節)에 대한 수술, 2.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명 및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해 고시하는 수술등중대진료

나. 수술등중대진료 설명 및 동의 방법·절차 등(안 제13조의3 신설)

- 수의사가 동물소유자등에게 구두로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서식을 신설*하고, 동의서의 보존 기한**을 명시

- * 별지 제11호의2서식(수술등중대진료 동의서) / ** 동의를 받은 날부터 1년

다. 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방법(안 제18조의2 신설)

- 동물병원 개설자가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수술등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에게 구두로 설명하도록 명시

라.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안 제18조의3 신설)

-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해야 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병원 내부에 책자, 인쇄물, 벽보, 비용 검색 전용 컴퓨터 등의 매체를 통해 진료비용 게시

마.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 조사·분석, 결과 공개(안 제20조 신설)

- 위탁기관을 통해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공개 범위 및 공개 방법 등을 명시

바.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명확화 및 신설(안 별표 2 개정)

-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 처분기준 명확히 하고, 가축 방역 및 진료업무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 처분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

- 동물병원이 진찰, 예방접종 등의 진료비용 게시 의무를 위반하여 시정을 명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행정처분 기준* 신설

* 행정처분 기준 : (1차) 업무정지 7일, (2차) 업무정지 15일, (3차) 업무정지 1개월

사. 수술등중대진료 동의서 신설 및 동물병원 휴업·폐업 신고서에 동물병원 개설신고서 분실사유란 추가(안 서식 제11호의2, 제17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조회('22. 2. 4. ~ 2. 14.) 결과를 반영함

3) 규제영향분석서 참고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제10호의2 서식”으로 한다.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8조의2, 제18조의3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의 진료(이하 “수술등중대진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内部臟器), 뼈 및 관절(關節)에 대한 수술
2.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명 및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해 고시하는 수술등중대진료

제13조의3(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및 동의 방법·절차 등) ①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사는 법 제13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동물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구두로 설명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 동의서(전자문서를 포함한

다) 에 해당 동물소유자등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의사는 동물소유자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동의서를 동물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18조의2(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방법 등)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수술등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에게 구두로 설명해야 한다. 다만, 수술등중대진료에 대한 예상진료비용을 제18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게시하고, 동물소유자등이 알 수 있도록 고지한 경우에는 설명을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의3(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 진찰 등(초진 진찰료, 재진 진찰료, 상담료, 예진료)
2. 입원(입원비)
3. 예방접종(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인플루엔자백신)
4. 검사 및 판독료(전혈구 검사, X-선 촬영)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 동물소유자등이 알아보기 쉬운 1개 이상의 장소에 책자, 인쇄물, 벽보, 비

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해당 동물병원에서 진료하지 않는 동물진료업의 행위는 게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제2항의 게시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병원 개설자는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배너(banner)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진료비용을 게시한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제20조(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 등)

①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을 통해 제18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시·도 및 시·군·구별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
 2. 동물진료업의 행위별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별표 2 I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I 제4호 중 “있을 때”를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표 별표 2 II 제18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동시에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가.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면허효력정지와 면허효력정지, 업무정지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중 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각각 더하여 처분한다.

다. 행정처분의 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18. 동물병원이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별표 2 II 제18호의 근거 법조문란 및 행정처분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동물병원이 법 제30조제3	법 제33조제7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	호의2	7일	15일	1개월

| 하지 아니하였을 때 | | | | |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제10호의2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2, 제18조의3,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및 진료비용 고지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술등중대진료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에 대한 특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일 당시 1명의 수의사가 동물 진료를 하는 동물병원에 대하여는 같은 호의 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1년이 경과하기 전에 수의사의 수가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1명에서 2명 이상인 날)부터 제18조의3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수술등중대진료 동의서

동물소유자등	성명	연락처
	주소	
수술등중대진료 대상	이름	성별
	특이사항(필요시)	
수의사	동물병원명	면허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설명 및 동의 사항

1.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중대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수술등중대진료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4. 수술등중대진료 전후에 동물소유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수의사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사로부터 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수술등중대진료 및 그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수술등중대진료와 관련한 수의학적 처리를 담당 수의사에게 위임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합니다. 또한 기타 내용이 발생한 경우 별지를 포함합니다.

년 월 일

동물소유자등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17호] <개정 2019. 11. 8.>

동물병원 []휴업 []폐업 신고서

※ []에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동물병원	명칭		
	전화번호	휴대전화	
	장소		
폐업일	년 월 일		

동물병원 개설 신고확인증 분실사유 :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휴업 (폐업) 사유						
마약·향정 신성의약품 현황 (폐업 시)	품명	수량	처분 계획			

「수의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병원 휴업(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첨부서류	신고확인증	수수료 없 음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축산농장 등의 상시고용 수의사의 신고 등) ① 법 제12 조제5항 전단에 따라 축산농장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 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하 이 조 에서 “축산농장등”이라 한다)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로 신고(이하 “상시고용 신고”라 한다)를 하 려는 경우에는 <u>별지 제11호서식</u> 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 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 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 사”라 한다)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2. (생략) ② ~ ⑦ (생략) <u><신 설></u>	제12조(축산농장 등의 상시고용 수의사의 신고 등) ① ----- ----- ----- ----- ----- ----- ----- ----- ----- ----- ----- <u>별지 제10호의2서</u> <u>식</u> ----- ----- ----- ----- ----- ----- ----- ----- ----- ----- ----- 1. 2.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u>제13조의2(수술등중대진료의 법</u>

<신 설>

위)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의 진료(이하 “수술등중대진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内部臟器), 뼈 및 관절(關節)에 대한 수술
2.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명 및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해 고시하는 수술등중대진료

제13조의3(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및 동의 방법·절차 등) ①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사는 법 제13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동물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구두로 설명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 동의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동물소유자등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수의사는 동물소유자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동의서를 동물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18조의2(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방법 등)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등 중대진료 전에 수술등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에게 구두로 설명해야 한다. 다만, 수술등중대진료에 대한 예상진료비용을 제18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게시하고, 동물소유자등이 알 수 있도록 고지한 경우에는 설명을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의3(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 진찰 등(초진 진찰료, 재진 진찰료, 상담료, 예진료)
2. 입원(입원비)
3. 예방접종(개 종합백신, 고양이

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인플루엔자백신)

4. 검사 및 판독료(전혈구 검사, X-선 촬영)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 동물소유자등이 알아보기 쉬운 1개 이상의 장소에 책자, 인쇄물,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해당 동물병원에서 진료하지 않는 동물진료업의 행위는 게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제2항의 게시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병원 개설자는 홈페이지 초기 화

<신 설>

면의 찾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
야 하며, 배너(banner)를 이용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진료비용
을 게시한 화면으로 직접 연결
되도록 해야 한다.

제20조(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
의 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 등) ① 법 제20조의4제3항
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
관을 통해 제18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및 산정기준 등
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방법은 농림축산식
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으로 한다.

1. 시·도 및 시·군·구별 최
저·최고·평균·중간 비용
2. 동물진료업의 행위별 최저·
최고·평균·중간 비용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u>는 사항</u>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u>사항 외에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및 결과 공 개의 범위·방법·절차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이 정해 고시한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방역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2522